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 종사전	협회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	16시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협회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	협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공사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공사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4. 교육일시 통보

공사 또는 협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 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 비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